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¹⁾

제1부 최저임금 적정수준²⁾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머리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의 공약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2015년 3월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 간에 견해 차이는 여전히 크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집권 여당과 노동부는 작년처럼 7% 안팎을, 재계는 1.6% 인상을 얘기한다.

제2절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에서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 비교한다. 제4절에서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과 기준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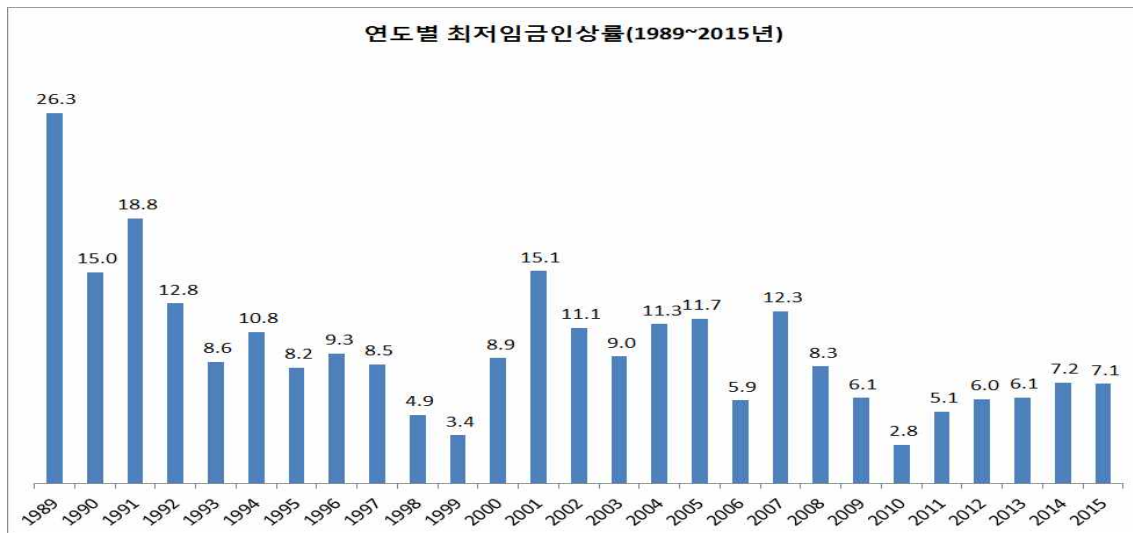
1) 2015년 3월 16일 이인영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2)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 KLSI 이슈페이퍼 2014-14를 업데이트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2. 한국의 최저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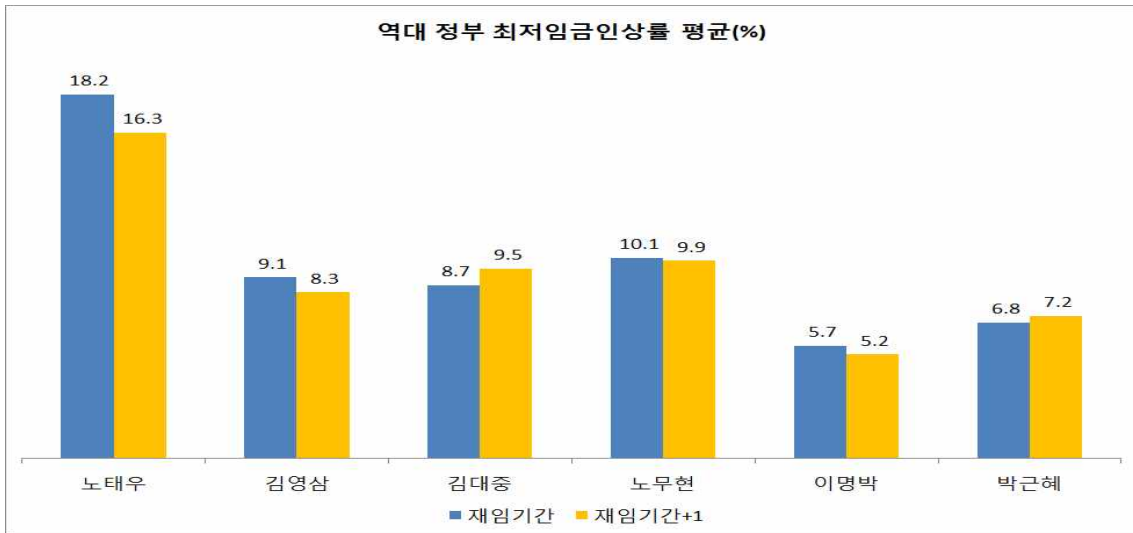
가. 최저임금 인상률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도입된 것은 1988년부터다.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였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성장에 겨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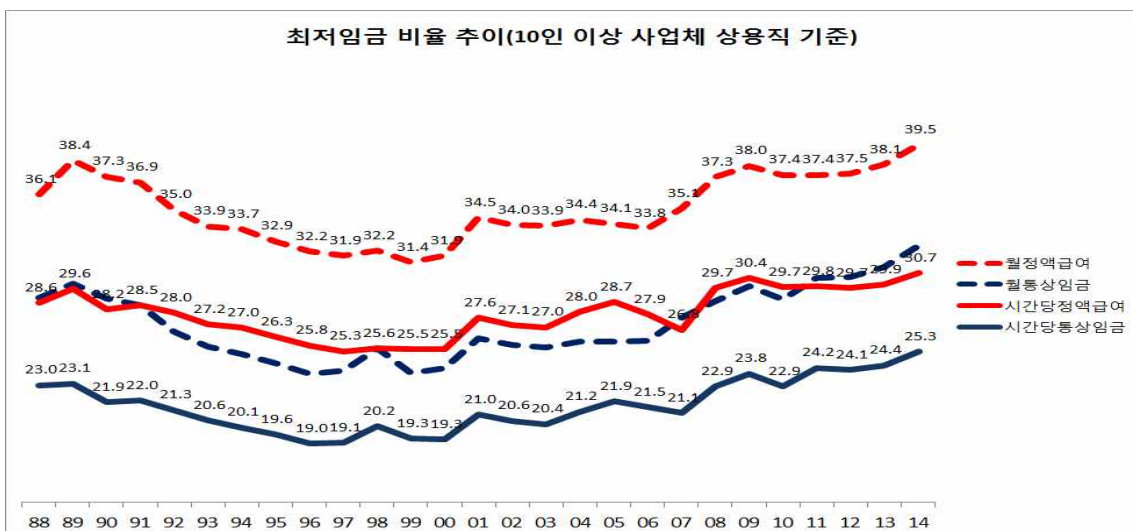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은 ‘노태우(18.2%)>노무현(10.1%)>김영삼(9.1%)>김대중(8.7%)>박근혜(6.8%)>이명박(5.7%)’ 순이다. 한데 새 정부 첫 해의 최저임금은 이전 정부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새 정부 2년차부터 다음 정부 1년차까지를 재임기간으로 하여 역대 정부 최저임금인상률 평균을 계산하면, ‘노태우(16.3%)>노무현(9.9%)>김대중(9.5%)>김영삼(8.3%)>>박근혜(7.2%)>이명박(5.2%)’ 순이다.



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비율 추이를 보려면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통계를 사용해야 한다. 201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월정액급여(39.5%)>월통상임금(32.6%)>시간당 정액급여(30.7%)>시간당 통상임금(25.3%)'순으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①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이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②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와 2014년 현재의 최저임금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표1>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주요 경제지표 추이

연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률		주요 경제지표(%)			10인이상 상용직 명목임금인상률	
	시간급 (원)	월 노동 시간	월 환산액 (천원)	시간급 (%)	월환산 액(%)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시간급 (%)	월임금 (%)
1988	475	240	114			11.7	7.1	18.8		
1989	600	240	144	26.3	26.3	6.8	5.7	12.5	22.1	18.6
1990	690	240	166	15.0	15.0	9.3	8.6	17.9	20.8	18.4
1991	820	235	193	18.8	16.4	9.7	9.3	19.0	17.7	17.6
1992	925	226	209	12.8	8.5	5.8	6.2	12.0	14.8	14.3
1993	1,005	226	227	8.6	8.6	6.3	4.8	11.1	11.8	12.3
1994	1,113	226	252	10.8	10.8	8.8	6.3	15.1	11.7	11.4
1995	1,205	226	272	8.2	8.2	8.9	4.5	13.4	10.8	10.9
1996	1,317	226	298	9.3	9.3	7.2	4.9	12.1	11.8	11.7
1997	1,428	226	323	8.5	8.5	5.8	4.4	10.2	10.2	9.4
1998	1,498	226	339	4.9	4.9	-5.7	7.5	1.8	4.0	3.7
1999	1,550	226	350	3.4	3.4	10.7	0.8	11.5	3.7	6.1
2000	1,688	226	382	8.9	8.9	8.8	2.3	11.1	9.0	7.3
2001	1,943	226	439	15.1	15.1	4.5	4.1	8.6	6.2	6.5
2002	2,158	226	488	11.1	11.1	7.4	2.8	10.2	13.2	12.7
2003	2,353	226	532	9.0	9.0	2.9	3.5	6.4	9.6	9.2
2004	2,620	220	576	11.3	8.3	4.9	3.6	8.5	7.2	7.0
2005	2,927	209	612	11.7	6.2	3.9	2.8	6.7	9.1	7.1
2006	3,100	209	648	5.9	5.9	5.2	2.2	7.4	9.1	6.9
2007	3,480	209	727	12.3	12.3	5.5	2.5	8.0	16.7	8.0
2008	3,770	209	788	8.3	8.3	2.8	4.7	7.5	-2.0	2.1
2009	4,000	209	836	6.1	6.1	0.7	2.8	3.5	3.6	3.9
2010	4,110	209	859	2.8	2.8	6.5	3.0	9.5	5.0	4.5
2011	4,320	209	903	5.1	5.1	3.7	4.0	7.7	4.8	5.1
2012	4,580	209	957	6.0	6.0	2.3	2.2	4.5	6.5	5.7
2013	4,860	209	1,016	6.1	6.1	3.0	1.3	4.3	5.3	4.4
2014	5,210	209	1,089	7.2	7.2	3.3	1.3	4.6	4.4	3.4
2015	5,580	209	1,166	7.1	7.1					
평균 (89~14)				9.8	9.2	4.1	5.3	9.4	9.5	8.8
노태우				18.2	16.5	7.9	7.5	15.4	18.9	17.2
김영삼				9.1	9.1	7.4	5.0	12.4	11.3	11.2
김대중				8.7	8.7	5.1	3.5	8.6	7.2	7.3
노무현				10.1	8.3	4.5	2.9	7.4	10.3	7.6
이명박				5.7	5.7	3.2	3.3	6.5	3.6	4.3
박근혜				6.8	6.8	3.2	1.3	4.5	4.9	3.9

자료: KOSIS

주 : 1994~2005년 최저임금은 매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평균 최저임금을 재계산했음.

<표2>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연도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소득통계	
	10인 이상 상용직				5인 이상 상용직				1인 이상 비정규직 포함				1인당 월국민 총소득	피용자 1인당 월임금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월		시간당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1988	36.1	29.0	28.6	23.0									41.2	22.5
1989	38.4	30.0	29.6	23.1									46.3	25.9
1990	37.3	28.9	28.2	21.9									44.6	25.5
1991	36.9	28.5	28.5	22.0									43.3	25.5
1992	35.0	26.7	28.0	21.3									41.7	24.7
1993	33.9	25.7	27.2	20.6									40.4	23.7
1994	33.7	25.2	27.0	20.1									38.6	23.5
1995	32.9	24.5	26.3	19.6									36.1	22.1
1996	32.2	23.8	25.8	19.0									35.5	21.5
1997	31.9	24.0	25.3	19.1									35.4	22.3
1998	32.2	25.5	25.6	20.2									38.2	22.5
1999	31.4	23.9	25.5	19.3	31.8	24.6	25.9	20.0					36.1	22.6
2000	31.9	24.2	25.5	19.3	32.3	24.9	25.9	20.0					34.1	23.5
2001	34.5	26.2	27.6	21.0	34.9	27.1	28.2	21.8					36.5	25.2
2002	34.0	25.8	27.1	20.6	34.6	26.8	27.8	21.5					36.7	26.3
2003	33.9	25.6	27.0	20.4	34.7	26.7	27.7	21.3					37.8	26.8
2004	34.4	26.0	28.0	21.2	35.2	27.2	28.9	22.3					38.0	27.7
2005	34.1	26.0	28.7	21.9	34.8	27.1	29.6	23.0					38.7	27.8
2006	33.8	26.1	27.9	21.5	34.6	27.2	28.8	22.6	39.7	33.1	34.3	28.6	39.1	28.4
2007	35.1	27.6	26.8	21.1	35.9	28.9	27.5	22.1	42.0	35.2	35.5	29.8	40.8	30.4
2008	37.3	28.8	29.7	22.9	38.3	30.0	30.9	24.3	43.1	36.4	35.6	30.1	41.9	31.7
2009	38.0	29.8	30.4	23.8	39.1	31.1	31.7	25.2	45.2	38.6	38.7	33.0	42.9	33.0
2010	37.4	28.9	29.7	22.9	38.4	30.1	31.0	24.3	45.1	38.9	38.0	32.8	40.2	32.6
2011	37.4	30.4	29.8	24.2	38.6	31.8	31.1	25.6	45.8	39.3	37.2	31.9	40.2	33.0
2012	37.5	30.4	29.7	24.1	38.8	31.9	31.0	25.6	46.1	40.1	35.8	31.1	41.3	33.9
2013	38.1	31.1	29.9	24.4	39.4	32.6	31.2	25.8	47.5	41.1	35.5	30.8	42.5	35.5
2014	39.5	32.6	30.7	25.3	40.9	34.3	32.1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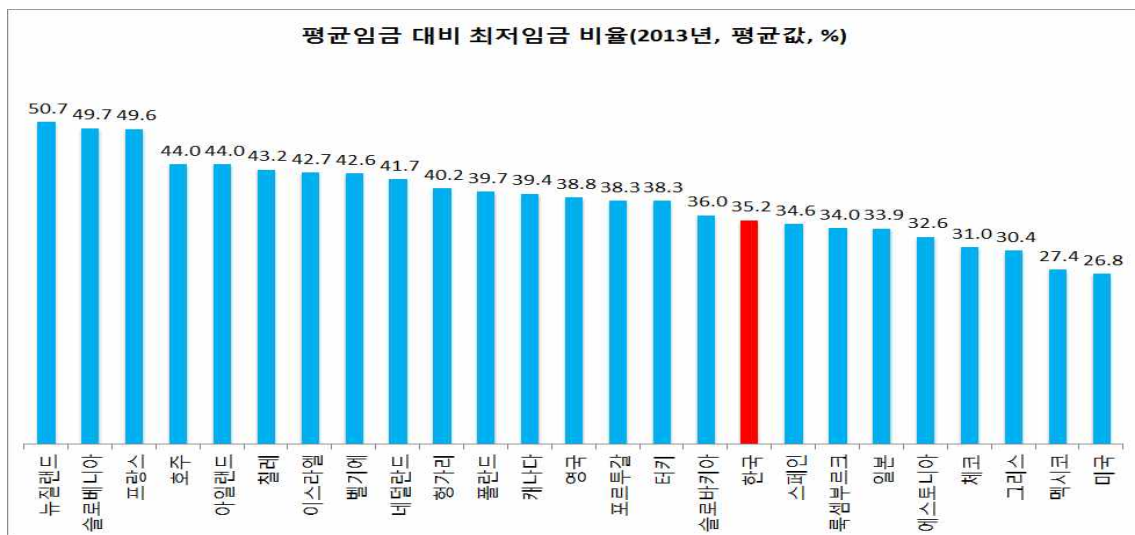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06년까지 매월노동통계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3.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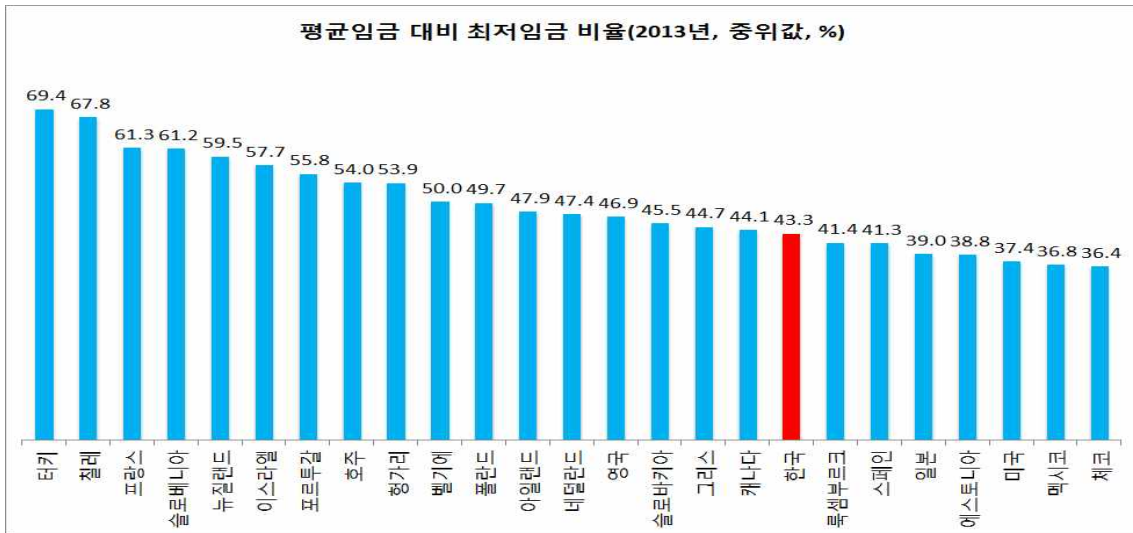
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6.5%에서 2013년 38.6%로 높아졌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5.0%에서 49.2%로 높아졌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13년 35.2%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페인(34.6%), 룩셈부르크(34.0%), 일본(33.9%), 에스토니아(32.6%), 체코(31.0%), 그리스(30.4%), 멕시코(27.4%), 미국(26.8%) 여덟 나라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3.3%로 25개 회원국 중 18위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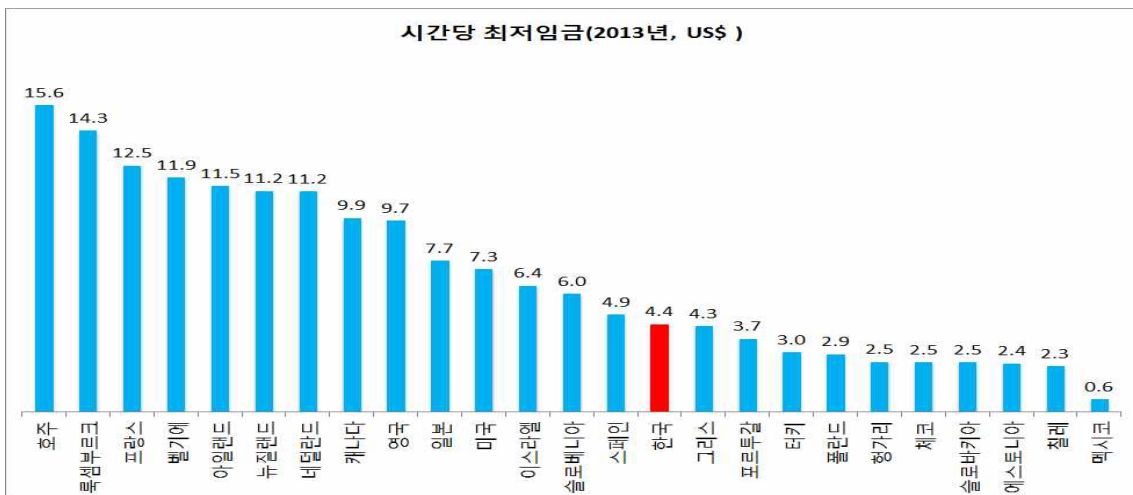
3) OECD 34개 회원국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26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8개국은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독일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노동조합이 실업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겐트시스템 때문에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태리는 헌법(제36조)의 '적정임금을 받을 권리'를, '모든 노동자는 관련 부문 단체협약 중 가장 낮은 임금률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고 노동법원이 일관되게 해석함에 따라 굳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Schulten 2008). 이들 나라는 모두 임금수준이 높고 단체협약으로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 따라서 비교대상을 34개 회원국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는 26위, 중위값 기준으로는 27위로 더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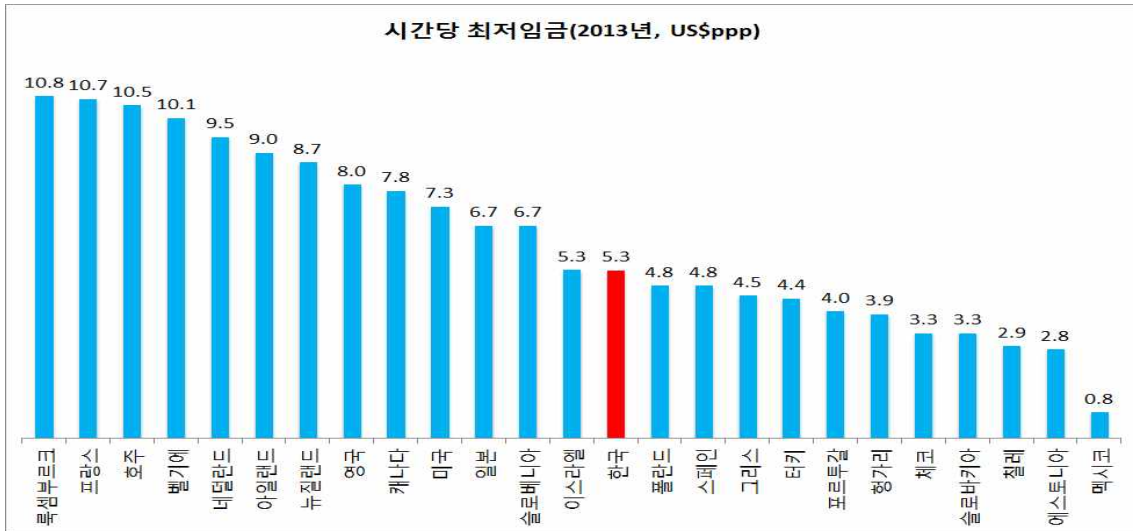


나. 시간당 최저임금

2013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9달러로 한국(4.4달러)보다 2.5달러 높다. 한국은 25개 회원국 중 15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호주(15.6달러), 룩셈부르크(14.3달러), 프랑스(12.5달러), 벨기에(11.9달러), 아일랜드(11.5달러), 뉴질랜드(11.2달러), 네덜란드(11.2달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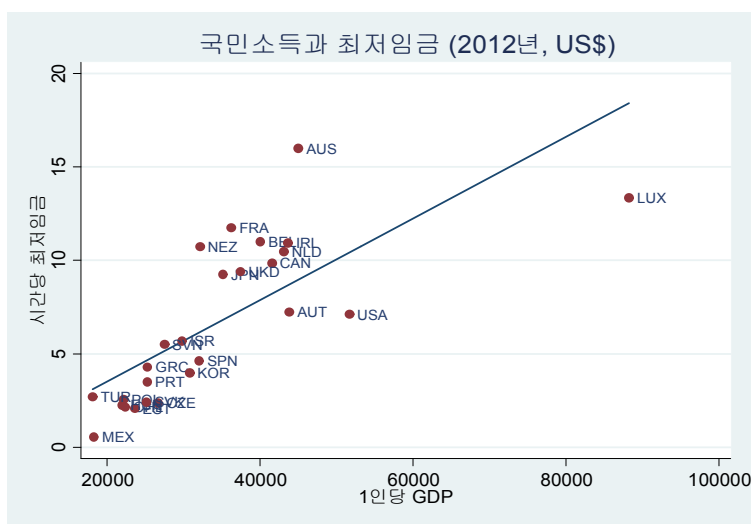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그리스(4.3달러), 포르투갈(3.7달러), 터키(3.0달러), 폴란드(2.9달러), 헝가리(2.5달러), 체코(2.5달러), 슬로바키아(2.5달러), 에스토니아(2.4달러), 칠레(2.3달러), 멕시코(0.6달러) 열 나라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해도 한국은 5.3달러로, OECD 평균(6.9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에 스페인 한 나라가 추가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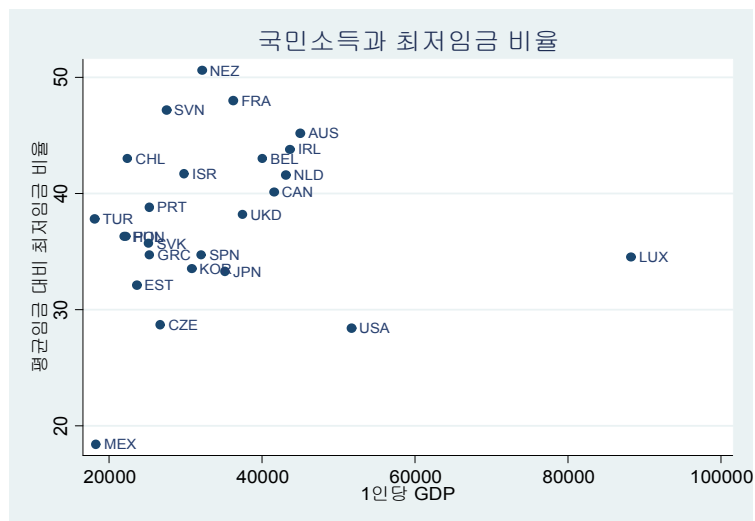
다. 최저임금과 국민소득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2012년 프랑스는 11.7달러, 영국은 9.4달러로 차이가 나고, 국민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은 최저임금이 7.1달러밖에 안 된다. 한국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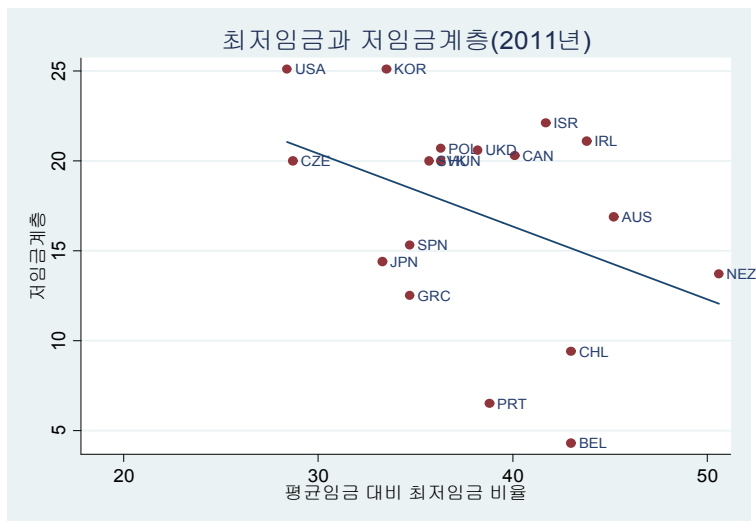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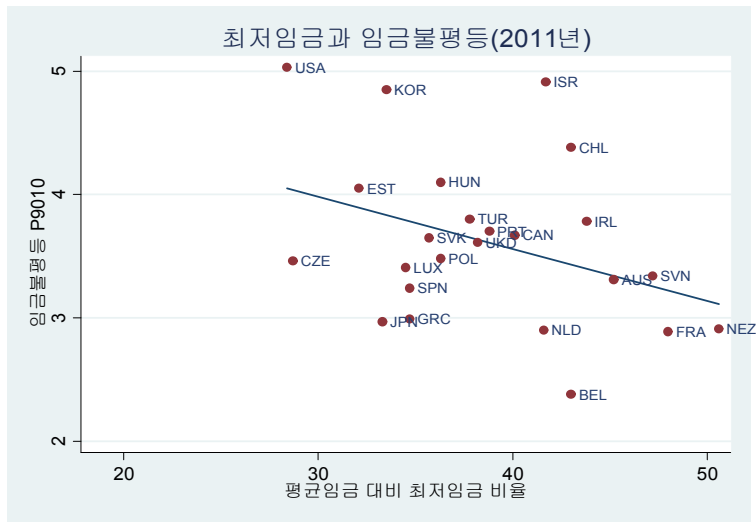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라.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다.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말해준다(Metcalf 1999).



4.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가.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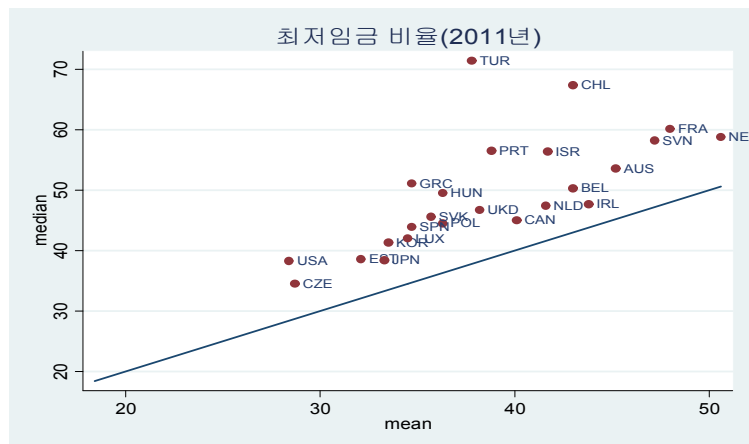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평균임금(average wage)은 평균값(mean)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중위값(median)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평균값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하면 되고, 중위값으로 계산할 때는 저임금 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또는 60%)’를 목표로 하면 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보다 ‘평균임금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①임금수준 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일노동통계조사)가 평균값만 조사하고 있고, ②한국에서 중위값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학계 일부에서는 ‘중위임금의 50%’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면 저임금 계층인데, ‘중위임금의 1/2’를 최저임금의 목표로 하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 일소’라는 최저임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임금 계층이 전체 노동자의 25%에 이르는 상태에서 ‘중위임금의 50%’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최저임금의 목표를 맞추는 우를 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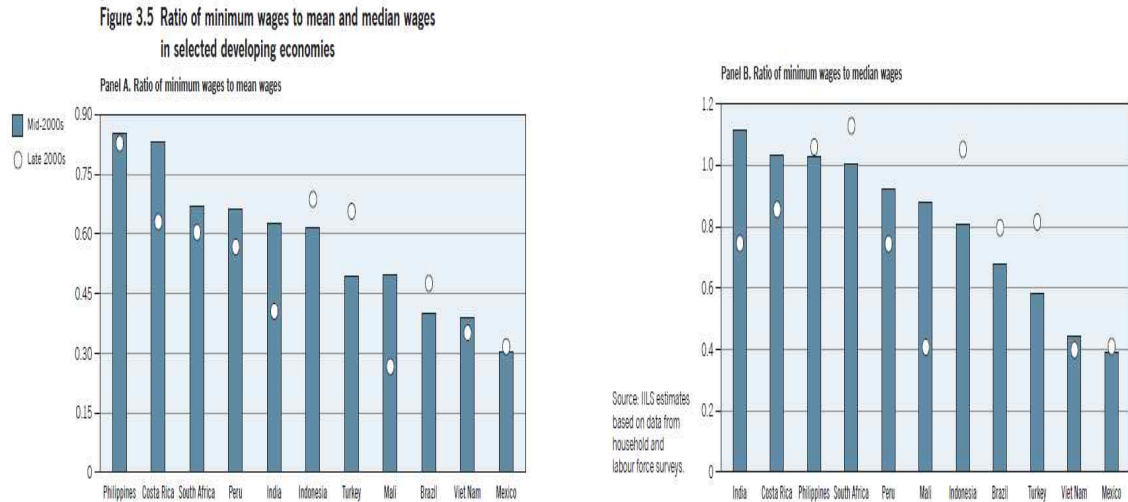
[참고1] OECD 국가 최저임금 비율(자료: OECD.stat)

한국은 2011년 최저임금이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3.5%, 중위임금의 41.3%로 7.8%p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평균임금의 37.8%, 중위임금의 71.4%로 33.6%p 차이가 난다. 이는 터키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2]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11개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mean)의 28~83%이고, 중위임금(median)의 40~110%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median)의 100%보다 높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비교대상과 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자료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자료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형식 논리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자는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② 저임금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직, 일용직 임금은 포함하면서 고임금 부문인 공무원과 교원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굳이 ‘5인 미만 사업체, 임시·일용직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가⁴⁾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4) OECD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풀타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정규직(파트타임)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난다.

다. 실제로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 유럽연합 각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3) 시간당 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할 뿐,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월환산임금을 구한 뒤 참고지표로 활용할 뿐이다. 2013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월 165.6시간인데도 209시간을 곱하는 것은, 한 달 177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4일 32시간을 더해 209시간 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용직, 호출근로 등은 유급주휴수당 적용대상조차 아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시간당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 각종 임금조사는 임금총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임금구성항목 중 정액급여를 사용한 것은, 정상근로시간 일해서 받는 통상임금 개념에 정액급여가 가장 가깝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3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액급여+(고정적) 특별급여'로 정의하고, 정액급여 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종합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하고, 노동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3>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비해 <표4>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

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대다수 국민의 인식과 배치된다.

<표3>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2013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값)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평균값	5인이상	2,578	3,114	15,567	18,807	39.4	32.6	31.2	25.8
	10인이상	2,665	3,267	16,257	19,934	38.1	31.1	29.9	24.4
	30인이상	2,786	3,526	17,275	21,862	36.5	28.8	28.1	22.2
	5~299인	2,433	2,778	14,492	16,544	41.7	36.6	33.5	29.4
	5~9인	2,133	2,330	12,221	13,352	47.6	43.6	39.8	36.4
	10~29인	2,395	2,695	14,132	15,897	42.4	37.7	34.4	30.6
	30~99인	2,546	2,926	15,470	17,778	39.9	34.7	31.4	27.3
	100~299인	2,678	3,222	16,528	19,887	37.9	31.5	29.4	24.4
300인이상	3,093	4,313	19,624	27,368	32.8	23.5	24.8	17.8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01만 5,74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표4>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2013년 6월)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전규모	평균값	전체	2,169	2,480	14,310	16,340	46.8	41.0	34.0	29.7
		5인미만	1,618	1,675	10,784	11,137	62.8	60.6	45.1	43.6
		5-29인	2,125	2,318	13,785	15,019	47.8	43.8	35.3	32.4
		30-299인	2,361	2,710	15,428	17,681	43.0	37.5	31.5	27.5
		300인이상	3,061	4,134	20,870	27,993	33.2	24.6	23.3	17.4
	중위값	정규직	2,390	2,809	15,001	17,723	42.5	36.2	32.4	27.4
		비정규직	1,578	1,605	12,469	12,657	64.4	63.3	39.0	38.4
		풀타임	2,315	2,667	14,650	16,940	43.9	38.1	33.2	28.7
		시간제	1,051	1,055	11,712	11,751	96.6	96.3	41.5	41.4
		전체	1,735	1,892	11,095	12,059	58.5	53.7	43.8	40.3
		5인미만	1,339	1,380	8,375	8,553	75.9	73.6	58.0	56.8
		5-29인	1,734	1,819	11,111	11,625	58.6	55.8	43.7	41.8
		30-299인	1,919	2,220	12,341	14,226	52.9	45.8	39.4	34.2
		300인이상	2,594	3,714	17,480	24,981	39.2	27.3	27.8	19.5
5인	평균값	정규직	1,951	2,199	11,905	13,428	52.1	46.2	40.8	36.2
		비정규직	1,181	1,200	8,927	9,107	86.0	84.6	54.4	53.4
		풀타임	1,846	2,033	11,333	12,500	55.0	50.0	42.9	38.9
		시간제	776	780	8,888	8,955	130.9	130.2	54.7	54.3
		5인이상	2,385	2,797	15,698	18,389	42.6	36.3	31.0	26.4
5인	평균값	정규직	2,554	3,055	16,243	19,514	39.8	33.2	29.9	24.9
		비정규직	1,697	1,744	13,473	13,793	59.9	58.2	36.1	35.2

이상	중위값	풀타임	2,475	2,919	15,795	18,692	41.0	34.8	30.8	26.0
		시간제	1,235	1,240	14,464	14,512	82.2	81.9	33.6	33.5
	5인이상	1,932	2,187	12,500	14,006	52.6	46.4	38.9	34.7	
	정규직	2,100	2,455	13,131	15,283	48.4	41.4	37.0	31.8	
	비정규직	1,290	1,322	9,881	10,109	78.7	76.8	49.2	48.1	
	풀타임 시간제	2,000 895	2,290 900	12,500 11,971	14,280 12,000	50.8 113.5	44.4 112.9	38.9 40.6	34.0 40.5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101만 5,740원)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나. 시중노임단가 8천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매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을 대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의 기본급 단가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노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 <표5>에서 2014년 시급 8,019원은 평균임금(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값)의 49.5%다. 이는 앞서 살펴본 최저임금 목표(평균임금의 50%)가 현실적임을 보여준다.

<표5> 중소(5~299인) 제조업 생산직 보통인부(단순노무종사원) 시급

연도	보통인부 시급(원)	5인 이상 시간당 임금 평균		보통인부 시급 / 시간당 임금 평균	
		정액급여(원)	통상임금(원)	정액급여(%)	통상임금(%)
1999	3,065	5,989	7,754	51.2	39.5
2000	3,131	6,515	8,456	48.1	37.0
2001	3,361	6,901	8,907	48.7	37.7
2002	3,465	7,756	10,028	44.7	34.5
2003	3,607	8,482	11,030	42.5	32.7
2004	3,914	9,062	11,734	43.2	33.4
2005	4,188	9,895	12,704	42.3	33.0
2006	4,772	10,763	13,699	44.3	34.8
2007	5,499	12,671	15,747	43.4	34.9
2008	5,849	12,181	15,530	48.0	37.7
2009	6,179	12,634	15,883	48.9	38.9
2010	6,645	13,276	16,940	50.1	39.2
2011	7,232	13,893	16,849	52.1	42.9
2012	7,530	14,772	17,925	51.0	42.0
2013	7,916	15,567	18,807	50.9	42.1
2014	8,019	16,210	19,357	49.5	41.4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2013년부터는 보통인부를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명칭 변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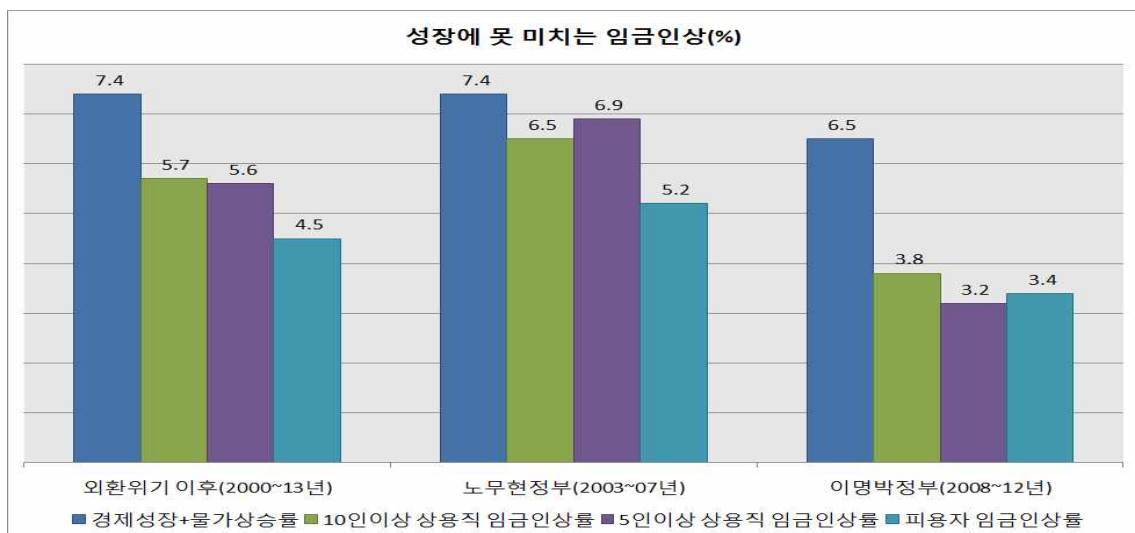
다.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α

생산성임금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4%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6%로 매년 1.8%p 덜 올랐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4.5%로 매년 2.9%p 덜 올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분배구조의 악화로 이어져,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5%에서 2013년 84.6%로 6.9%p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3.4%로 3.1%p 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5.7%로 매년 0.8%p 덜 올랐다. 그 결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만 개선하려 해도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1~3.3%)’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제2부 최저임금 고용효과⁵⁾

1. 머리말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어 왔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고교 교과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가르치고 있고, 일부 언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론과 실증분석 두 측면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2. 이론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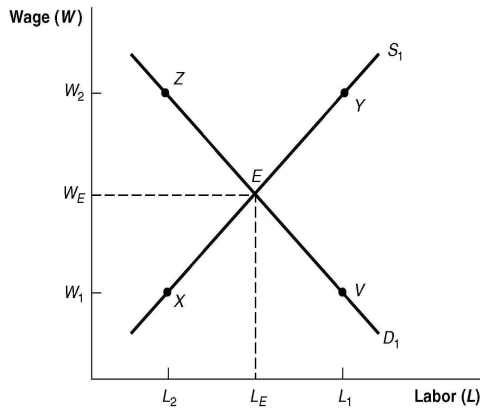
가. 신고전파의 완전경쟁시장 모델

먼저 최저임금이 고용을 축소시킨다는 신고전파 모델부터 살펴보자.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노동공급곡선(S_1)과 노동수요곡선(D_1)이 만나는 점(E)에서 임금(W_E)과 고용(L_E)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W_E 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W_2)이 정해지면, 임금은 ($W_2 - W_E$) 만큼 증가하지만 고용은 ($L_E - L_2$) 만큼 감소한다. 최저임금은 취업중인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상실을 가져다준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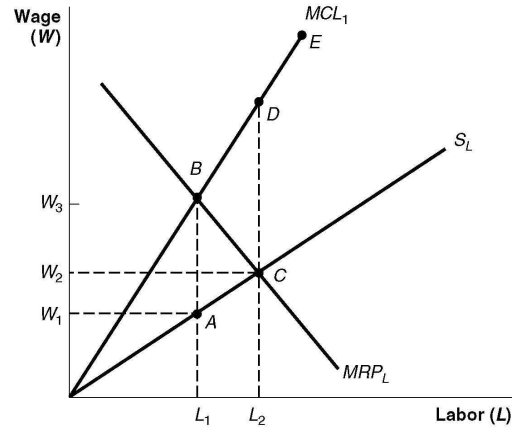
5)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KLSI 이슈페이퍼 2014-20(『산업노동연구』20권 3호 게재)을 일부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6) 주로 Kaufman & Hotchkiss(2006), Ch.6과 Hyclak, Johnes and Thornton(2005), Ch.5를 참조했음.

<그림1> 완전경쟁시장



<그림2> 수요독점 모델



나. 수요독점모델과 효율임금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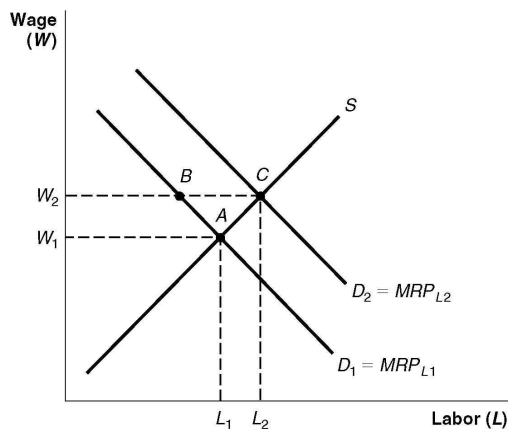
수요독점모델과 효율임금가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먼저 수요독점 모델에서 최저임금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그림2>가 수요독점 노동시장이 아닌 경쟁적 노동시장이라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MRP_L)은 노동수요 곡선이 되어, 노동공급 곡선(S_L)과 만나는 C점에서 임금(W₂)과 고용(L₂)이 결정된다. 그러나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MCL₁)이 만나는 점에서 고용이 결정되고(L₁), 임금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일치하는 W₃이 아닌, 이보다 낮은 W₁에서 결정된다. 즉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은 경쟁적 노동시장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W₁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W₂)이 결정되면, 노동자들 임금은 W₂로 증가하고 고용은 (L₂-L₁)만큼 증가한다. 물론 고용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W₂~W₃ 사이에서 결정된다면 고용은 원래 고용수준인 L₁보다 증가하지만, 최저임금이 W₃을 상회하면 고용은 L₁보다 감소하게 된다.

수요독점 모델에 대해서는 ‘수요독점이란 원래 특정 노동시장에서 오직 하나의 기업이 노동의 구매자인 경우를 말한다. 독과점기업들이 담합해서 유일한 구매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던가, 탄광촌에 광산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저임금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생산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고, 유사한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특히 소매상인 경우 지리적으로 밀집해 있어 매우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독점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요독점 모델 쪽에서는 ‘만약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곡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우상향(右上向)한다면, 그리고 기업이 그들이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얼마간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들 기업은 모두 수요독점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효율임금 가설은 임금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림3>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높아지면($W_1 \rightarrow W_2$), 노동자들의 육체적 건강이 개선되거나 사기가 높아지고 노력(effort)이 증진되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RP_L)이 증가하며, 이에 따라 노동수요 곡선은 우상방으로 이동하고 고용이 증가한다($L_1 \rightarrow L_2$). 물론 효율임금 가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증가는 육체적 건강이 개선될 정도로 저임금이거나, 노동자들의 사기와 노력이 증가할 정도의 소폭 인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임금인상 폭 만큼 노동자들 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질의 노동력 유입으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림3> 효율임금 가설



3. 실증분석

가. 영미권

1980년대 영미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초기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한 Brown et al.(1982)은 ‘세계 열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0대는 1~3%, 20대 초반은 1% 미만 고용이 감소한다.’라 하고, Reynolds et al.(1991)은 ‘실증분석 결과 10대를 제외한 다른 집단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라 하고 있다.⁷⁾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고용에 부정적 영향

7) Ressler et al.(1996)은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파트타임 고용증가를 초래했다.”라 하고 있다.

을 미친다.’는 명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이러한 명제가 도전 받게 된다. Card and Krueger(1995)는 최저임금을 인상한 주(州)와 인상하지 않은 주를 비교하는 일종의 자연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Machin and Manning(1994)은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며, 1980년대 최저임금 비율 하락은 임금분산을 확대시켰을 뿐 고용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라 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메타분석이 이루어졌다. Doucouliagos and Stanley(2009)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0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측정한 64개 연구(1972~2007년 출간)에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 1,474개를 메타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발표 선택편의(Publication Selection Bias)에 오염되어 실제보다 크게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편의를 수정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다’고 밝히고 있다.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도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한 16개 연구에서 236개 최저임금 탄력성 추정치와 710개 부분 상관계수를 메타 분석한 결과, 재가 돌봄 산업과 소매음식점 이외에는 유의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①정책담당자들이 고용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거나, ②기업이 생산성, 가격, 이윤,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부정적 고용효과를 상쇄하거나, ③경쟁노동시장 모델보다 수요독점 모델이나 효율임금가설이 영국 노동시장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 결과가 잇따르면서, 논의는 점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업이 어떻게 흡수하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는 ‘미국 조지아와 앨라배마 주 81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7~09년 연방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은 가격인상, 이윤율인하, 임금격차 축소, 노동이동 감소, 높은 성과 기준 등 다른 조정채널을 통해 흡수된다.’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①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조차 기업주들이 상쇄하거나 흡수해야 할 다른 비용인상과 비교하면 미미하며, ②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양한 조정 채널을 통해 해결되며, ③경영진은 고용감축이나 노동시간단축을 상대적으로 값비싼 반생산적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라 하고 있다.

Schmitt(2013)도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게 대세다. 가능한 조정채널 11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조정채널은 노동 이동 감소, 조직 효율성 개선, 고소득자 임금 덜 인상, 소폭의 가격 인상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용자들도 이러한 조정수단만으로 고용감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하다’라 하고 있다.

이밖에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기업 또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1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연소자, 소수민족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수혜자 집단에서 고용 증가율은 평균치를 상회한다. 연소자들은 예외적으로 미세한 (-) 고용효과가 발견되지만, 청소년 노동시장은 주로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최저임금 도입은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단위노동비용 증가를 가져오지도 않았다(Low Pay Commission, 2003).

나. OECD·ILO

OECD(1998)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첫째,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부분적으로 이견은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연소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여성이나 파트타임 등 다른 집단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 최저임금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새로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되고, 이보다 얼마간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간접효과 때문에 임금이 인상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임금을 보장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밖에 최저임금은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이 낮고 저임금계층 비율도 낮다.

셋째,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에서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그러나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그 효과가 줄어든다. 빈곤가구 가운데 취업자가 한 사람도 없는 가구가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의 부모가 중산층 이상인 가구도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근로소득보조제가 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보조제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와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LO의 Saget(2001)는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20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횡단면-시계열 분석을 한 뒤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첫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다고 해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거나 고용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 노동시장 경직성 특히 임금 경직성은 남미 국가에서 비공식 부문이 증가한 주된 요인이 아니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제조업 평균임금 등을 통제하더라도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빈곤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한국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김유선(2004, 2011, 2014), 이시균(2007), 정진호(2008), 이병희(2008), 남성일(2008), 김우영(2010), 김주영(2011), 김대일(2012)을 꼽을 수 있다.

김유선(2004)은 1988년 1월부터 2004년 3월까지 통계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변화가 고용률 변화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남성,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25~54세 중장년층에는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 설명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일 때는 남성과 청년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성과 중장년층, 고령층에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유선(2011)은 199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시계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2000년 이후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유선(2014)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사용해서 패널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을 전체 고용으로 하던 청년, 고령자, 여성으로 하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시균(2007)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사업체패널 자료를 사용해서 전체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패널분석 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 지수는 고용률과 고용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은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진호(2008)는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비율과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5~24세 청년층은 유의미하지 않은 (-), 25~54세 중장년층은 유의미한 (+), 55세 이상 고령층은 유의미한 (-)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병희(2008)는 이중차이법을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직장유지율과 취업유입률에 미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김주영(2011)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남성일(2008)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2007년의 제도 변화가 수도권 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의 적용 확대는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다준 반면, 노동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우영(2010)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자료를 이용해서 15개 시도의 시계열 횡단면 자료를 구축했다. 기업에는 채용비용, 훈련비용, 해고비용 등 준고정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조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 모형을 사용해서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남녀 청년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가 없지만, 남녀를 구분하면 최저임금이 10% 증가할 때 청년여성(15~24세)은 1.6%, 청년남성(15~29세)은 1.1% 고용이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임금이 하위 5% 이하인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했다. 분석결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만 신규채용 감소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2013)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신규채용 감소효과도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4. 맺는 말

영미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이후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

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등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Chapman(2004)의 “최저임금은 고용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 개선에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의 차이는 노동경제학자들에게 흥미로 울지 몰라도 정책입안자나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흥미로운 게 없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저임금 산업에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정책적 함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참고문헌>

- 김대일(2012), “최저임금의 저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효과”, 『노동경제논집』 35:3.
- 김우영(2010),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시계열 분석”, 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발표문.
- 김유선(2004),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 고용 및 임금에 미친 영향 평가』.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유선(2011),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김유선(2014),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20.
- 김주영(201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최저임금 효과분석』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남성일(2008),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실증 분석”, 『노동경제논집』 31:3.
- 유경준(2013),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 이병희(2008), “최저임금의 고용유지 및 취업유입 효과”, 『산업노동연구』14(1).
- 이시균(2007),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노동리뷰』 6월호, pp.43-51.

- 정진호(2008),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제6장, 한국노동연구원.
- Ashenfelter, Orley & Robert S. Smith. 1979. "Compliance with the Minimum Wage La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pril 1979, pp.335-50.
- Brown, Charles, Curtis Gilroy, and Andrew Kohen. 1982.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487-528.
- Burkhauser, Couch, and Wittenburg(2000), “A Reassessment of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Journal of Labor Economics* 18(4):653-681.
- Card, David and Alan B. Krueger. 1995.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
- Chapman, Jeff. 2004.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 Evidence From Recent State Labor Market Trends." *Economic Policy Institute Briefing Paper* .
- Doucouliafos and Stanley(2009), “Publication Selection Bias in Minimum-Wage Research?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7:2, pp.406-428.
- Hirsch, Kaufman, and Zelenska(2011), “Minimum wage channels of adjustment”, IZA Discussion Paper No.6132.
- Hyclak, Johnes and Thorton(2005), *Fundamentals of Labor Economics*.
- Kaufman & Hotchkiss(2006), *The Economics of Labor Market*, 7th ed.
-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Does the UK Minimum Wage Reduce Employm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2(3):499-520.
- Low Pay Commission. 2003. *The National Minimum Wage: Fourth Report of the Low Pay Commission*.
- Machin, Stephen and Alan Manning. 1994.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Evidence From the U.K. Wages Council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7(2):319-29.
- Metcalf, David. 1999. "The British National Minimum W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7(2):171-201.
- Neumark and Wascher(2004), “Minimum Wages, Labor Market Institutions,

- and Youth Employ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7(2): 223-248.
- Neumark, Salas and Wascher(2013), “Revisiting the Minimum Wage-Employment Debate: Throwing Out the Baby with the Bathwater?”, IZA Discussion Paper No.7166.
- OECD. 1998. "Making the Most of the Minimum : Statutory Minimum Wages, Employment and Poverty." Pp. 31-79 in *Employment Outlook*, OECD.
- Oi, Walter(1962), “Labour as a Quasi-fixed Fact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6):538-555.
- Ressler, Watson, Mixon. 1996. "Full Wages, Part-Time Employment and the Minimum Wage", *Applied Economics*, November, pp.1415-1419.
- Reynolds, Lloyd G., Stanley H. Masters and Colletta H. Moser. 1991. *Labor Economics and Labor Relations*, 10th ed., Prentice Hall
- Sabia(2009), “Identifying Minimum Wage Effects: New Evidence from Monthly CPS Data”, *Industrial Relations* 48(2), pp.311-328.
- Sabia, Burkhauser, and Hansen(2012), “Are the Effects of Minimum Wage Increases Always Small? New Evidence from a Case Study of New York Stat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65:2, pp.350-376.
- Saget, Catherine. 2001. "Is the Minimum Wage an Effective Tool to Promote Decent Work and Reduce Poverty? The Experience of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ILO Employment Paper* 13.
- Schmitt(2013), “Why Does the Minimum Wage Have No Discernible Effect on 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Schulten(2008), “Towards a European Minimum Wage Policy? Fair Wages and Soci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14(4): 421-439.